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속보: 2011년 12월 14일

CUOMO 주지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도입

잠정적 성희롱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까지 확대할 계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코치를 포함한 개인이 캠퍼스에서 발생한 아동 성희롱을 법률 집행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학 직원이 성희롱 행위를 법률 집행 기관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육 전문가 및 보건 전문가들에게 필수 신고 요건이 적용되지만 코치에게는 신고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주지사의 이번 제안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캠퍼스의 학생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정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학부모님들은 대학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법안으로 학생들을 해치는 행동을 최대한 빨리 법률 집행기관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새로운 법안 도입 발표에 이어 최근에는 Syracuse University와 Penn State의 운동 프로그램에서 신고된 성희롱 사건이 일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전체 학생들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Cuomo 주지사의 확장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주지사는 성희롱 가해자 판결을 받은 사람이 스쿨버스 운전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법무장관으로서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기타 온라인 식별자를 뉴욕주 형사사법 서비스부의 뉴욕주 성범죄자 등록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온라인 약탈자에 대한 전자식 보안 및 표적법(Electronic Securing and Targeting of Online Predators Act: e-STOP)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e-STOP법으로 성범죄자와 관련된 수 많은 계정을 주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웹 사이트에서 삭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인기 있는 네트워킹 사이트 안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직장이나 학교 근처에 살고 있으며 위험도가 중간 이상인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을 형사사법 서비스부에서 개시했습니다.

###

Korean